

1. 개정이유

경과 선발 시 수사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업무 구조를 '수사' 중심으로 정립, 확장된 안보 업무를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'보안경과' 용어를 '안보수사경과'로 변경(안 제19조제1호, 제19조제3호, 제27조제1항, 제27조제2항제1호, 제27조제2항제2호)
- 나.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'보안경찰' 용어를 '안보경찰'로 변경(안 제19조제3호)
- 다. 업무 분야를 지칭하는 '보안' 용어를 '안보'로 변경(안 제22조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호, 같은 조 제3호 중 '보안경과'를 '안보수사경과'로 한다.

제19조제3호 중 '보안경찰'을 '안보경찰'로 한다.

제22조 중 '보안'을 '안보'로 한다.

제27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1호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'보안경과'를 '안보수사경과'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경과별 직무의 종류) (생략) 1. 일반경과는 기획·감사·경무·생활안전·교통·경비·작전·정보·외사나 그 밖에 수사경과· <u>보안경과</u>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2. (생략) 3. <u>보안경과</u> 는 <u>보안경찰</u> 에 관한 직무 4. (생략)	제19조(경과별 직무의 종류) 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안보수사경과</u>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안보수사경과</u> — <u>안보경찰</u> ----- -- 4. (현행과 같음)
제22조(경과부여)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. 다만, 수사, <u>보안</u> , 항공,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.	제22조(경과부여) ----- ----- ----- <u>안보</u> ----- ----- -----
제27조(전과의 유형) ①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· <u>보안경과</u>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. 다만,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<u>보안경과</u> ·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	제27조(전과의 유형) ①----- ----- <u>안보수사경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안보</u> <u>수사경과</u> ----- -----

인정할 수 있다. ② (생략) 1. 경과가 신설되는 경우: 일반경과·수사경과· <u>보안경과</u> 또는 특수경과에서 신설되는 경과로의 전과 2. 경과가 폐지되는 경우: 폐지되는 경과에서 일반경과·수사경과· <u>보안경과</u>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	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-- <u>안보수사경과</u> ----- ----- ----- 2. ----- ----- ----- <u>안보수사경과</u> ----- -----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경찰청 안보기획관리과	
연 락 처	(02) 3150 - 2828